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란?

노후나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해와 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평생 동안 일정액의 금전 급부를 정기적으로 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2. 적용대상과 가입자 유형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가 해당하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가입자유형은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첫째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되며, 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사업장의 근

로자와 사용자가 된다.

둘째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로서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이 된다.

세째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하더라도 연금수급요건인 20년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로서 6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 연금급여산정 및 구성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연금급여는 소득계층간에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마련한 법정의 급여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고 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 가입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수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1 참조)

가급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적 성격으로 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대상이다.

(표 2 참조)

〈 표 1 〉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 | |
|-------------------|
| 2.4(A+B)×(1+0.5N) |
|-------------------|
- 2.4 : 가입기간 240개월 (20년)에 대한 기준치
 - A(균등부분) : 사업장가입자전원의 표준보수율 액을 평균한 금액
 - B(소득비례구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보수(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
 - N : 가입기간 20년 초과 년수

〈 표 2 〉 가입연금액

지급대상	요 건	연금액
배우자		연 6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 는 자녀 2인 이내	만원 1인당 연 3만 6천원
부모	60세 이상 또 는 장해등급 2 급 이상에 해 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인당 연 3만 6천원

4. 연금급여 종류

연금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분류된다. 이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원의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세분된다.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5. 비용부담

국민연금은 제급여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률의 각출료를 징수한다. 앞에서 언급한 제급여를 위해서는 각출료수준이 보수월액의 10%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이지만,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차별 각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즉 사업장가입자는 노사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각출료로 출발하여 연차적 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협행퇴직금 준비금에서 일부를 각출료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노사의 신규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는 임의가입형식을 택하고 있는 만큼 그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차별 각출료는 <표 4>와 같다.

6. 국민연금기금의 설치·운용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소득능력이 있을 때에 납입하는 각출료를 계속 적립하여 발생하는 적립금과 이익금을 기금으로 하여 급여사유발생시에 급여를 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장래의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운용수익이 최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되도록 한다. 또한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사, 정부, 연금수급권자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계획 및 결과에 대해 심의하며 또한 그 결과를 공개한다. *

<표 4> 연차별각출료율

<표준보수월액대비>				
구분	연도	88-92	93-97	98 이후
근로자	1.5%	2.0%	3.0%	
사업용자	1.5%	2.0%	3.0%	
장				
가퇴직금전환금	—	2.0%	3.0%	
입				
자계	3.0%	6.0%	9.0%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표 3> 연금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수준

연금의 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본인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할 때 (광부 선원등 특수직의 경우 55세에 달할 때)	기본연금액(100%) + 가급연금액
	본인	가입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60세에 달할 때	기본연금액의 72.5% ~ 92.5% + 가급연금액
	본인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광부, 선원등 특수직의 경우 55세 이상 60세 미만)	기본연금액의 75% ~ 95% + 가급연금액
연금	본인	가입기간 20년 이상, 55세 이상인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	기본연금액의 75% ~ 95% + 가급연금액

금		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때	
특례 노령연금	본인	88.1.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할 때	기본연금액의 일정률 (25%~75%) + 가급연금액
장해연금	본인	가입기간중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신체,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로서 초진일 현재 1년 이상일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기본연금액의 60%~100%+가급연금액
유족연금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기간 15년 이상인 가입자이던 자 -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2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	기본연금액의 40%~60%+가산연금액
반환일시금	본인 또는 유족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에 해당될 때 -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격 상실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할 때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사용자 부담금, 본인납부액, 퇴직금전환금에 각각 일정이자를 적용

엄마 아빠

환경보전

아들딸의 복된내일

